

고성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4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0. 18.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개정 이유

2000년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중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사무 정비와 아울러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가. 분뇨등관련영업 허가시 영업구역을 고성군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대행계약 체결이 불요하며 아울러 행정규제적인 성격으로 규제사무완화 차원에서 삭제함.(안 제6조)
- 나. 규제사무완화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한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삭제함. (안 제9조제3항5호,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, 안 제14조, 안 제15조제3항)
- 다.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내용 중복으로 인하여 삭제(안 제8조, 안 제18조, 안 제21조)

3. 참고사항

- 0.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
- 0. 입법예고 : 결과 의견없음

4. 본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및 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.

③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분뇨의 수집·운반을 분뇨등관련영업자가 수행한 경우 직접 징수할 수 있다.

제12조제2항중 “분뇨수집·운반대행업자”를 “분뇨수집·운반업자”로 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8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6조(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의 대행)</u> ①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를 함에 있어서 능률성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수집·운반 및 처리 업무를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에게 대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의 대행 계약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행구역 2. 대행기간 3.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.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.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<p>③제1항의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군수의 분</p>	<p>제6조 <삭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뇨처리등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8조(부적정 오수처리시설등의 신고)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에 대하여 그 시설이 용 량 및 제조업자의 표시 등을 하지 않은 부적정 제품이거나 유지관리 또는 설치기준에 적 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.</p>	<p>제8조 <삭제></p>
<p>제9조(사육제한 지역등)</p> <p>①~② (생략)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. 1. ~ 4. (생략) 5.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</p>	<p>제9조(사육제한 지역등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삭제></p>
<p>제10조(허가절차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	<p>제10조(허가절차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제15조(분뇨등 관련영업)</p> <p>① ~ ② (생략) ③ 군수는 분뇨수거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뇨등 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인력, 장비, 설비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분뇨등 관련영업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삭제></p>
<p>제18조(청문)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준용한다.</p>	<p>제18조 <삭제></p>
<p>제21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, 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</p>	<p>제21조 <삭제></p>